개최일/시행일	2017-07-01	일련번호	1-4	공개구분	외부공개
구분	고시	위원회		중심조개최일	
기준/사례구분	기준	관련근거	고시 제2017-109호(약제)		

제 목

[일반원칙] 병용금기 성분,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및 임부금기 성분

결정사항/복지부 행정해석 내용

■ 고시 개정 전체내용

1.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병용금기 성분 및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과 임부금기 성분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
 가. 이 경우 임부금기 성분은 고시 성분을 함유한 단일제와 복합제를 모두 포함함

2. 다만, 병용금기 성분,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및 임부금기 1등급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처방·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. 이 경우 다음의 가, 나 모두에처방·조제 사유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명시하여야 하며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그 사용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.
 가.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「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」에 따라 설치한 “의약품 처방·조제 지원 소프트웨어”에 의해 컴퓨터 화면에 제공(Pop-up)된 사유기재란
 나.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」에 따른 요양급여비용명세서

3. 2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인 “acetaminophen (encapsulated 포함)(서방형 제제에 한함)”등 서방형 제제, 장용성제제 등은 그 제제의 특성상 분할하거나 분말 형태로 처방·조제하여서는 안 됨

4. 임부금기 2등급에 해당하는 성분을 처방·조제할 때는 부득이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 타당성을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야 하며, 투약 이전에 반드시 환자에게 적절한 안내조치를 하여야 함

5. 급여기준 적용일 :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다음날부터 적용한다.

■ 고시 개정 고시번호(시행일자)
고시 제2017-109호(2017.7.1.)

■ 고시 개정 사유
고시명 현행화

■ 변경 전 고시번호(시행일자)
고시 제2017-93호(2017.6.1.)